

SAINT-GOBAIN 그룹 단체주식청약제도 한국직원 설명자료

Saint-Gobain 은 CEO 의 결정에 따라 2024 년 3 월 11 일에 시행될 예정인 *Saint-Gobain* 그룹 단체주식청약제도에 따른 주식청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예상 청약조건, 한국에서의 청약 및 청약과 관련한 주요 세무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청약의 개요

귀하에게 전달된 직원용 브로셔 및 기타 자료들도 함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직원을 위해 할당된 주식 증자

Saint-Gobain 주식은 해당 직원들에게 할당된 *Saint-Gobain* 의 증자에 따라 참여 *Saint-Gobain* 그룹사의 자격을 갖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국가에서 *Saint-Gobain* 단체주식청약제도는 “클래식(classic)” 제도의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청약주식수가 제공된 주식수를 초과하게 되면 청약주식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참가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자격 요건

Saint-Gobain 및 그 직접 또는 간접 과반지분소유 참여 자회사에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최소 3 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개월이란 기간은 연속적 기간일 수도 있고 연속되지 않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연속되지 않은 기간으로서 3 개월은 2023 년 1 월 1 일부터 청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되며, 해당 직원은 해당 일자 현재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청약기간

청약기간은 2024년 3월 11일에 시작하여 2024년 3월 25일(해당일자 포함)에 종료됩니다. 청약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2024년 3월 25일까지 청약하여야 합니다.

청약가격

Saint-Gobain 주식의 청약가격은 “기준가격”에 대하여 20% 할인된 가격입니다. 기준가격은 2024년 3월 11일로 예정된 가격 결정일 이전 20거래일 동안의 Saint-Gobain 주식의 시초가(始初價)의 평균값에 기초하여 결정된 가격입니다.

청약가격은 원화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Saint-Gobain 주식가치는 유로화와 원화 간의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화 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로 환산되는 주식가치는 상승할 것이며 반대로, 원화 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로 환산되는 주식가치는 하락할 것입니다.

투자 한도

투자 가능한 최대 청약금액은 귀하의 2023년도 급여총액(상여금 포함) 또는 2024년도 예상 급여총액의 25%입니다. 고용주 대응 출자금(제공되는 경우)은 25%의 한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납입방법

원화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청약가격은 2024 년 3 월 25 일 전까지 다음의 귀하의 고용주의 은행계좌로 전신환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은행	계좌명의자 (고용주)	계좌번호
Citi Bank	Hankuk Sekurit Limited	1-001909-024-01
SC Bank	Saint-Gobain Isover Korea	200-20-099351
SC Bank	Saint Gobain Performance Plastics Korea	200-20-099254
SC Bank	Saint-Gobain Korea Holdings Co., Ltd.	351-20-230295

주식의 보관

귀하의 청약 주식은 프랑스 은행인 Uptevia 또는 경우에 따라 현지보관기관에 귀하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보관됩니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스톡옵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우리사주 매입제도 등) 해외주식을 부여받은 국내 거주자가 (i) 해외 증권사를 통하여 해당 해외주식을 거래하거나. (ii) 해당 주식매각대금에 대하여 관련 외국환은행 또는 감독기관에 외국환 거래 신고를 았은 채 이를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한국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2023. 6. 19. 발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피부여자는 자신의 해외주식을 국내에서 인가를 받은 증권사에 개설된 증권계좌로 이체/예치하고 해당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매도)하여야 합니다.

외환규제

청약금액을 송금하기 전 현지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행정절차입니다.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송금할 금액 및 청약관련 입증서류(예, 청약서류)를 현지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취득금액을 송금하기 위해서 개별 직원은 회사가 필요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 신고

해외 모회사가 직원 복지를 위해 수립된 직원 주식취득제도에 따라 과반지분소유 한국 자회사의 현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은 한국 증권법상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사모로 간주됩니다.

5년간의 투자금액 인출제한

본 청약제도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 귀하의 투자에 대해 약 5년의 인출제한 기간이 적용되며(2029년 5월 1일 종료) 이 기간 동안 조기인출(아래의 “조기인출사유” 참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투자금액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조기인출사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위에서 언급한 인출제한기간 중 투자금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원의 혼인;
2. 직원의 가정이 이미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자녀를 출산하거나 아동이 입양 목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3.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법원에서 최소 한 자녀 이상의 단독 혹은 공동의 통상 거주지가 해당 직원의 거주지가 되도록 명령한 경우;
4. 직원, 배우자 혹은 자녀가 프랑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5. 직원 혹은 배우자의 사망;

6. 고용계약의 종료;
7. 직원, 자녀 혹은 배우자가 프랑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저축자금을 분배하는 경우;
8. 주된 주거의 취득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저축자금을 분배하는 경우; 및
9. 직원의 현재 또는 전 배우자, 동반자, 시민 동반자(civil partner)가 직원에게 가정 폭력을 가한 경우.

상기 내용은 프랑스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현행 조기인출 관련규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조기인출사유는 프랑스 법률에 맞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합니다. 조기인출사유를 적용하거나 적용하고자 할 경우, 프랑스 법률이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귀하의 고용주에게 사전에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조기인출신청이 가능한 경우인 사망, 장애, 귀하에 대한 가정 폭력 또는 고용계약의 종료 이외의 경우,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상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소속 회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당

본 2024년 제도에 따라 청약한 주식에 대해 2025년 및 그 후에 분배되는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해당 주식에 대해 2024년에 지급되는 2023년도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해당 주식에 대해 지급된 모든 배당금은 귀하에게 지급됩니다.

의결권

해당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환

약 5년 동안의 인출제한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또는 조기인출 대상자일 경우 인출제한기간 만료 전에 투자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귀하는 (현금 또는 Saint-Gobain 주식을 통한) 투자액의 상환을 요청하거나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언제든지 투자액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 직원들을 위한 세금에 관한 정보

본 요약에서는 한국세법의 적용 목적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일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나, 모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요약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만 제시되는 것이므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권고사항으로서, 직원들은 Saint-Gobain 단체주식청약제도에 가입함에 따른 세무사항에 대하여 각자의 세무 자문인에게 별도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 열거된 세무사항에 대한 설명은 청약 당시 유효한 한국 세법 및 세무관행을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법 및 세무관행은 추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A. 프랑스에서의 과세

프랑스 국내법에 따르면, 프랑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12.8%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프랑스 조세일반법(French Tax Code) 238-0 A 1, 2 및 2 bis-1°에 정의된 비협조국가 또는 지역¹에 개설된 은행계좌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투자에 따라 실현되는 소득은 프랑스에서 과세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B. 한국에서의 과세

청약 시점

¹ 비협조국가 또는 지역 리스트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협조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앵귤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파나마, 세이셸 및 바누아투.

할인액((a) 매수일(즉, 증자 되는 날이자 주식이 직원의 계좌로 교부되는 날) 기준 주식의 증가와 (b) 청약가격 간의 차액으로 산정됨)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6.6%~49.5%의 누진소득세율(주민세 포함)에 따라 과세되며 다음의 2023년도 사회보험료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고용주 및 직원 각각 3.999100% 부담, 최대 월 4,412,290원), 국민연금(고용주 및 직원 각각 4.5% 부담, 최대 월 265,500원), 고용보험(직원이 0.90%, 고용주가 1.15%~1.75% 부담), 산재보험(고용주만 0.70%~18.60% 부담) 그리고 임금채권보장기금(고용주만 0.06% 부담)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분담금(0.003%). (주: 세율과 관련하여, 귀하가 외국인일 경우 20.9%의 일률 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할인액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고용주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분담금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직원은 주식을 매수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관련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할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합니다. 단,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당국이 직원으로부터 관련 소득에 대한 사회보험료 분담금을 징수할 현실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관련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보험료 분담금은 없습니다.

귀하가 “클래식” 제도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급여공제를 통해 할부로 청약금액을 납입하기로 선택할 경우, 고용주로부터 청약금액에 해당하는 무이자 대여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귀하는 급여공제에 따라 감소하는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과세 소득만큼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러한 이자금액은 (i) 연 이자율 4.6% 또는 (ii) 고용주가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 의해 산출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될 것이고 6.6%~49.5%(주민세 포함)의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소득은 귀하 고용주의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소득세 연말정산시 고용주가 해당 직원의 과세소득에 인정이자 금액을 가산).

배당금

귀하가 주식에 대하여 수령하는 배당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과세대상금액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전액이 해당됩니다. 주식 배당금으로 수령하는 소득은 6.6%~49.5%(주민세 포함)의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귀하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신고 및 납세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배당금이 직원 주주에게 지급되거나 추가 Saint-Gobain 주식에 재투자되는 해의 다음 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납부된 세금은 한국 세법에 명시된 한도까지 한국에서의 세금산정 목적상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배당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을 합산한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한, 배당소득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입니다.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을 합산한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원이 세무서에 신고하면 해당 내용이 국민건강보험 쪽에 공유되며, 다음해 국민건강보험의 기준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환 시

주식매도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매도 수익과 매수일(즉, 증자되는 날)이자 주식이 직원의 계좌로 교부되는 날) 당시 주식 증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개인의 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양도차익에서 연 2,500,000원의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은 사회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3억원까지는 22%의 세율이,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한)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보고의무

주식 취득 자금 송금 시의 외환관리 목적상 보고/확인 절차와 상기 세금신고를 제외하고, 기타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연중 어느 월말일 기준으로 해당 계좌의 월간 잔액이 5억원 또는 외화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중 외국의 해외금융계좌(즉, 해외 은행계좌, 증권계좌 등)을 한국 조세당국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